

## [긴급]광양제철남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 교체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10.

광양제철남초등학교장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 원)

공사명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운동장 마사토 교체 공사				
공사현장	광양제철남초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금호로 4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1일				
공사개요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573,769,800	476,040,000	432,763,636	43,276,364	97,729,8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공사종류: 전문공사
- 나. 당해업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100%)**
-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바. 총액입찰대상 공사이며,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22개시군)** 대상 공사입니다.
- 사.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자.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3. 입찰서 제출

-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4(화) 10:00 ~ 2026. 7. 16(목) 10:00**
- 나. **개찰일시: 2026. 7. 16(목) 11:00**
- 다. **개찰장소: 광양제철남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A값: 본 공고문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는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입니다 또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98/100)의 계산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합니다.
- 아.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건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3)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아래 “나. 공중구성”의 주 공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중 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00%
합계		100%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전담광주특별시 22개 시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라.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현장설명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같습니다.
- 나. 설계서 열람장소: 광양제철남초등학교 행정실 시설담당 (전화 : 061-798-1406)

#### 6.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 7. 입찰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서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 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입찰보증금

-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4. 입찰 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사.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같음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시 **10점을 감점** 합니다.
- 아. **상대업종을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가. 기술능력: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에 제출
  -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 2) 기술인자격증 사본
  -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등
 ※ 「등록기준 충족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로 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에 상  
 대업종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발급된건설기술인 보유증명  
 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판단
-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다. 【붙임4】 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323,881	4,029,337	2,577,879	529,454	12,576,839	-	-	25,037,39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상이며, 원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원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약약서(약정서) 제출**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광양제철남초등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상기 가.에 따라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협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협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협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협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2) 광양제철남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7.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라남도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준수

-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19. 기타 사항

-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학교에서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 나.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이서, 공사입찰유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이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본 공고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jge.or.kr>)에 게재됩니다.
-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문고 또는 <http://www.posef.or.kr> → 포스코교육재단/POSEF 신문고/신문고/신고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제철남초등학교 행정실(☎ 061-798-1408,1406 주소 : 전남광주특별통합시 광양시 금호로 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양제철남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절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광양제철남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

업체명:

대표자: (인)

**광양제철남초등학교장 귀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업종)		연락처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2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3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6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b>점검자 최종의견 : (인)</b>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부적합